③ 인권위원이 궐석이 된 경우, 후임자는 궐석이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임명 또는 추천하여야 한다.

④ 궐석이 된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인권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임명과 직무】 ① 위원장은 상임 인권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처를 지휘·감독한다.

④ 위원장이 일시적인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 인권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신분보장】 ① 인권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탄핵결정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2. 장기의 질병이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 인권위원은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되며, 제2호의 경우에는 재적 인권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된다.

③ 제2항의 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권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3.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다만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정당의 당원

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6. 그밖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② 인권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1조 【전체위원회】 ① 위원회에 인권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위원회를 둔다.

② 전체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전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의·의결하게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규칙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3.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5. 소위원회가 의결하지 못하거나 전체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의결한 사항

6. 전체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체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7. 위원회의 예산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그밖에 이 법에서 위원회가 의결하도록 정한 사항

④ 전체위원회의 의사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인권위원 재적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는 이 법, 위원회 규칙과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위임된 범위안에서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 【의사의 공개】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 【자문기구】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면한다.

③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사무처의 조직과 분장사무, 직제 및 정원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⑤ 사무총장은 국가공무원법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 소속 직원은 별정직, 계약직 또는 고용직공무원으로 한다.

⑥ 사무총장 및 소속 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 ①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과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소속 직원의 임용, 배치, 휴직, 면직 또는 징계를 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사무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소속 직원의 구분, 직급, 채용조건, 임용절차, 임기, 복무,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 소속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제17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 소속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징계처분 또는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사항, 고충처리 등을 심의·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 권한, 징계의 사유와 종류, 심의절차와 운영, 이의신청과 재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재심 의결은 국가공무원법 제9조에 의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본다.

제18조 【지방사무소】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무처 산하에 지방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사무소의 설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인권연구기관】 ①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방안,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등의 연구·조사·교육을 위하여 인권연구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인권연구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위원회의 예산 및 회계감사】 ① 위원회의 예산관련 업무에 관하여 위원장은 예산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② 예산기관이 위원회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할 경우에는 예산기관의 장이 위원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③ 인권위원 및 위원회 소속 직원은 감사원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감찰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에서 제외한다.

제21조 【비밀준수의무】 인권위원 또는 인권위원이었던 사람,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사람, 위원회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 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이었던 사람,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조사에 참여한 공무원 등, 전문가, 감정인 또는 그밖의 사람은 그 직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와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22조 【업무】 인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또는 법령안에 관한 자문 또는 권고

2.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3.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과 제도, 정책과 관행에 대한 조사·연구와 권고

4. 인권침해를 방지하거나 예방하는 데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기준의 제시와 권고

5. 국제인권조약의 비준여부와 국제인권조약을 국내에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에 대한 조사·연구와 권고

6. 인권교육과 홍보

7. 인권침해 또는 인권침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한 조사·연구와 권고

8. 인권단체·국제인권기구·다른 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와 교류·협력

9. 그밖에 인권보장과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 【국가기관의 협의의무】 ① 관계 국가기관의 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미리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4조 【법령에 관한 자문 및 권고】 위원회는 국회 또는 다른 국가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자문·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5조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정부보고서의 작성 지원】 ① 국제인권조약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보고서의 작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는 정부 보고서를 작성하는 관계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제인권조약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정부 보고서를 심의하는 국제기구에 위원회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6조 【인권상황의 조사】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요구 또는 조회를 받은 기관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7조 【시설의 방문 및 조사】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금시설 또는 다수인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인권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방문 및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때 방문 및 조사를 하는 인권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소속 직원·전문가 또는 그밖의 사람을 동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하여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조사를 하는 인권위원,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인권위원 등"이라 한다.)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방문 및 조사를 받는 구금시설 및 다수인보호시설의 장은 즉시 방문 및 조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조사를 하는 인권위원 등은 구금시설 또는 다수인보호시설의 모든 장소와 자료 등에 접근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조사를 하는 인권위원 등은 구금시설 또는 다수인보호시설의 관계자 또

는 시설수용자와 면담할 수 있고 구술 또는 서면으로 사실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인권위원 등은 구금시설 또는 다수인보호시설의 장에게 면담·진술 또는 서면의 작성사실과 내용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인권위원 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내의 일정한 장소 또는 상황에 관하여 검증을 하거나 조사한 자료 등의 원본 또는 등본, 사진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된 자료 등을 영치할 수 있다.

⑦ 그밖에 이 조에 의한 방문 및 조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 【청문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의 대표자,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 사실 또는 의견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 ①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개선 또는 시정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즉시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개선 또는 시정권고를 받은 기관이 제2항에 의한 이행계획을 작성할 경우 위원회에 자문 또는 조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개선 또는 시정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와 의견표명, 제2항에 의한 관계 기관의 이행내용 또는 이행계획, 제4항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설명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제30조 【일반지침의 작성과 권고】 ①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정한 분야에 관하여 인권침해행위의 유형과 판단기준, 인권의 침해를 예방하거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이 해야 할 조치의 내용, 업무수행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일반적인 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지침을 작성할 경우, 관계기관 등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지침을 공표하고, 관계기관 등의 장에게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31조 【인권교육과 홍보】 ① 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교육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인권교육과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공무원의 채용시험, 승진시험, 연수 및 교육훈련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정부출연연구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장과 협의하여 인권에 관한 연구를 요청하거나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그 교육내용에 인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필요한 내용과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시설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32조 【인권자료실】 ① 위원회는 그 산하에 인권자료실을 둘 수 있다.

② 인권자료실은 인권에 관한 국내외의 정보와 자료, 매체 등을 수집·정리하여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인권자료실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으로 본다.

④ 인권자료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제출】 ①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포함된 재판이 계속중인 경우,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의 허가를 얻어 계속중인 재판의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4조 【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① 위원회는 해마다 전년도의 활동내용과 인권상황 및 개선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등은 제1항의 보고서와 제2항의 보고에 대한 의견, 조치사항과 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의 허가를 얻어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그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장 인권침해의 조사와 구제

제36조 【조사대상 인권침해】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1.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 제24조 내지 제28조, 또는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에 정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하여 평등권을 침해당한 경우

②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사면되거나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병력 또는 달리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 또는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굴욕감이나 그밖에 정신의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본다.

③ 이 법 제2조 제4항에 의한 '다수인보호시설'에서 일어난 인권침해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로 본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거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의한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 【시설수용자의 진정】 ①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소속공무원 등"이라 한다.)은 그 사람에게 즉시 진정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 장소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소속공무원 등은 진정서의 작성사실과 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설수용자가 인권위원 또는 위원회 소속 직원의 면전에서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소속공무원 등은 즉시 그 뜻을 위원회(위원회의 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속공무원 등은 제1항에 따라 시설수용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즉시 위원회에 송부하고 위원회로부터 접수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위원회로부터 그 통보에 대한 확인서와 면담일정서를 발급받아 진정을 원하는 시설수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경우 혹은 시설수용자가 진정을 원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인권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구금시설 또는 다수인보호시설을 방문하게 하여 진정을 원하는 시설수용자로부터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정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때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원 등은 즉시 접수증명서를 작성하여 진정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한 인권위원 또는 직원의 구금시설 또는 다수인보호시설의 방문 및 진정의 접수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⑥ 시설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정서 작성과 제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금시설과 다수인보호시설에서 이행해야 할 조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 【진정의 각하와 조사의 개시등】 ① 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한다.

1.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진정의 내용이 그 자체로 명백히 허위이거나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가 아닌 자가 한 진정에 관하여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뜻이 명백한 경우

4.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 다만,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진정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진정이 제기될 당시 국회의 국정조사 또는 감사가 진행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 재판이 계속중이거나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다른 법률에 정한 권리구제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6. 진정이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7.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 제1호, 제4호 또는 제7호의 경우 다른 국가기관이 그 진정을 조사 또는 처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진정을 그 기관에 이송할 수 있고 제1항 제5호의 경우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수사기관, 또는 권리구제절차가 진행중인 기관에 그 진정을 이송할 수 있다. 이때 이송을 받은 기관은 그 진정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 그 진정이 제1항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진정을 각하 또는 이송하거나 조사를 중지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진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 또는 진정인에게 권리를 구제받는 데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제39조 【다른 구제절차와 이송】 ① 진정의 내용이 다른 법률에 정한 권리구제절차에 따라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제출하고자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진정을 그 다른 국가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다른 법률에 따라 권리행사에 필요한 기간 또는 시효를 계산하는 경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제출된 때에 다른 법률에 의한 권리행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진정을 이송한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진정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송받은 기관은 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진정에 대한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 【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①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의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36조에 따라 진정이 제기된 후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한 경우, 위원회는 피해자 또는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고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검찰총장 또는 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중지 또는 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의뢰 또는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 【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당사자,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와 진술청취

2. 당사자, 관계인,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와 제출된 자료 등의 영치

3. 조사사항과 관련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검증 또는 감정

4. 당사자, 관계인,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5. 증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신문

② 위원회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위원 등으로 하여금 관련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자료 등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하여 검증 또는 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위원회는 그 장소에 당사자, 관계인 또는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 또는 증언을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인권위원 등은 관계기관 등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된 자료 등을 영치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인권위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2호, 제3호 또는 제3항에 의한 조사를 한 경우 위원회는 제출을 요구하거나 영치한 자료 등의 목록, 그 대상자, 검증 또는 감정을 한 장소, 시설, 자료 등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이 조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관계인, 그 가족, 동거인, 고용인 또는 피고용인, 관계기관 등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게 증인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증인으로 참여한 사람은 조사의 절차와 내용을 기재한 조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⑦ 이 조에 의한 검증,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제2절, 제3절, 제5절, 제6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구인에 관한 절차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⑧ 위원회가 자료 등의 제출 또는 그에 대한 검증, 감정을 요구하는 경우, 그 자료 등이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인 경우에 한하여 관련 중앙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그에 대한 검증,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관련 중앙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제42조 【질문검사권】 ① 위원회는 제41조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의 소재 또는 관계인에 관하여 알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질문하거나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제41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3조 【인권위원의 제척 등】 ① 인권위원과 제48조에 의한 조정위원(이하 "인권위원"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진정에 대한 조사와 조정에서 제척된다.

1. 인권위원이 진정의 당사자가 되거나 진정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때

2. 인권위원이 당사자와 호주, 가족,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가 있었던 때

3. 인권위원이 진정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

4. 인권위원이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거나 되었던 때

5. 인권위원이 진정에 관한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에 관여한 때

② 당사자는 인권위원에게 공정하고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사유를 명시하여 그 인권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기피신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자신이 결정하기에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회부할 수 있다.

③ 인권위원은 제1항 각 호의 1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그 진정의 조사와 구제업무를 회피할 수 있다.

제44조 【진정의 기각】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정을 기각한다.

1.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2. 진정의 내용이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진정에 대하여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 진정의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 【합의의 권고】 위원회는 조사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6조 【조정】 ① 위원회는 진정에 대하여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하고 제45조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진정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② 조정은 조정절차를 시작한 후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다음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조정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 중에 당사자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2. 피진정인의 피해자에 대한 사과

3. 원상회복, 손해배상, 손해보상, 그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4.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⑤ 조정위원회는 제3항의 결정을 한 경우 지체없이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 당사자가 제5항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제47조 【조정의 효력】 제46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성립한 조정과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48조 【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 조정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회가 회부한 조정을 심의·의결한다.

③ 조정위원 중 3인은 인권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위촉하고, 나머지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가 위촉하되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1.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또는 민간단체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10년이상 종사한 사람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이상 종사한 사람

④ 조정위원의 위촉, 임기,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조정의 절차와 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49조 【임시조치 등】 ① 위원회는 진행중인 인권침해를 중지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인권침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거나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의료, 급식, 피복 등의 제공

2. 다른 기관이 하는 검증 또는 감정에 대한 참여

3. 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장소의 변경

4. 인권침해행위의 중지

5. 인권침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의 당해 직무배제

6. 그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정인, 참고인 또는 증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과 명예의 보호, 증거의 확보 또는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기관 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의 경우 소속기관 등 또는 관계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가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되며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받은 사항을 위원회가 정한 기한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제50조 【피해자를 위한 소의 제기】 ①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피해자를 위하여 위원회의 이름으로 관할 법원에 필요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소의 제기는 진정에 대한 조사가 끝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51조 【소속기관 등에 대한 권고】 ①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가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46조 제4항 각호에 정한 구제조치의 이행

2.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에 관하여는 제29조 제2항 내지 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 【피진정인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고발을 받은 검찰총장 또는 군 참모총장은 고발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사결과 또는 수사계획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징계를 요구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필요한 징계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3조 [의견진술기회의 부여] ① 위원회는 제51조 또는 제52조에 정한 권고 또는 조치를 하기 전에 피진정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피진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진술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명백히 한 경우 또는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진술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54조 【법률구조】 ① 제46조 제6항에 따라, 조정에 갈음한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하고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에 소속기관 등의 장이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는 피해자에게 권리를 구제받는 ~~데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해자를 위하여 법률구조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률구조법 제4조에 의한 법률구조법인에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법률구조를 요청하는 경우 법률구조법인은 법률구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때 법률구조법인은 법률구조의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가 제공하는 법률구조의 절차,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55조 【조사와 조정의 비공개】 이 장에 의한 위원회의 조사와 조정 및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 【처리결과의 공개】 위원회는 이 장에 의한 진정의 조사 및 조정의 내용과 처리결과, 관계기관 등에 대한 권고와 관계기관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표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보칙

제57조 【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관계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58조 【위원회의 책임면제】 위원회, 인권위원, 조사위원, 위원회 소속 직원, 위원회의 위촉 또는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감정인, 민간단체 또는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작성, 공개된 보고서 또는 공표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일체의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9조 【불이익 금지와 지원】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위원회에 한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인권침해행위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나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지원 또는 보상의 내용,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60조 【위원회와 민간단체의 협력】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의 내용, 절차와 결과에 관하여 민간단체에 자문하거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특정하여 민간단체에 위임하거나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한 민간단체의 관계자는 그 업무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직원으로 본다.

제61조 【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이와 동일시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장 벌칙

제62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정서의 작성·제출을 허가하지 않거나 방해한 사람
2. 제27조,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사람
3. 제41조에 의하여 선서한 후 허위의 증언을 하거나 허위의 감정을 한 사람
4. 제59조 제1항에 위반하여 불이익을 준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에 위반한 사람
2. 제37조 제1항에 따른 진정서의 작성사실 및 그 내용의 비밀을 침해한 사람
3. 제37조 제3항에 위반한 사람
4. 제4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허위의 자료 등을 제출한 사람
5. 제49조에 의하여 위원회가 하는 조치를 방해하거나 조치의 요구를 거부한 사람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제41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항에 의한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사람
2. 정당한 이유없이 제41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항에 의한 위원회의 제출요구에 불응한 사람
3. 제42조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질문에 허위의 답변을 한 사람

제63조 [허위진정의 죄] ① 제36조에 의한 인권침해의 조사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위원회에 진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죄는 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논한다.

제64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제37조 제6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정한 구금시설 또는 다수인보호시설에서 이

행해야 할 조치를 위반한 사람

2. 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한 사람

② 제60조에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이 조에 의한 과태료는 위원장이 부과하고 법무부장관이 징수한다.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위원회는 즉시 그 결정문을 법무부장관과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이 조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이 조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4항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의 재판을 하여야 한다.

⑥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65조 【고발 및 징계요구】 ① 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행위 또는 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검찰총장 또는 관할 군참모총장에게 고발하거나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그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고발 또는 징계요구에 관하여는 제52조 제3항, 제4항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 인권위원의 임기】 이 법에 의하여 처음으로 임명되는 상임 인권위원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1인과 국회가 추천하는 2인, 비상임 인권위원 중 대통령과 국회가 임명·추천하는 각 1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계획의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조직 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안에 예상되는 위원회의 활동내용, 사무처의 조직, 예산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제기기간의 특례] 이 법 시행일 이전에 공권력에 의하여 생명권 또는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의 경우, 이 법 시행일을 제38조 제1항 제4호의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회법에 제46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 3 [인권특별위원회] (1) 인권의 보호와 향상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권특별위원회를 둔다. (2) 인권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15인 이내로 하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3) 제4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인권특별위원회에 준용한다."

② 국회법 제121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감사원장·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의문사 특별법과 민주화운동유공자보상법의 문제점

의문사특별법

1. 조사대상의 차별

이 법안은 조사대상을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1조)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민주화운동관련 의문사와 그렇지 않은 의문사를 구별하여 민주화운동 관련 의문사만 조사하여 진상을 밝힌다는 것은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민주화의 이념에도 모순됩니다. (어제 김성재교수님은 이 문제를 고치기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민회의를 통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 다시 지적합니다.)

둘째, '민주화운동'을 법안 2조 1항에서 개념정의하고는 있지만, 이 정의가 매우 애매하고 모호하여(과연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을 법률로 정의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의문입니다.) 그 범주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법의 제정주체들이 '민주화운동'이라는 이름으로 포괄하려는 사건들이 과연 포함될 수 있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셋째, 의문사특별법은 민주화운동유공자보상법과 함께 가는 것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법안으로는, 두 법에서 같은 내용(예컨대, 민주화운동 등)을 정의하는 내용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어 우스꽝스럽습니다.

2. 조사범위의 지나친 축소

의문사는 대체로 장기간불법구금 및 고문으로 이어지는 불법수사의 연속선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는 살인 보다도 오히려 장기간불법구금과 고문을 더욱 비난하여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불법구금과 고문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것이 일어나는 제도적 환경을 개혁하지 못한다면, 근원적으로 의문사는 막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인권침해범죄를 청산하려면 적어도 고문과 장기간 불법구금은 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한편, 예외적이지만 몇몇 실종사건들이 있는데, 이 부분 역시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청산의 대상이 되는 인권침해의 조사범위를 한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미나 스리랑카의 경우 실종자조사에 한정했다는 사례를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미나 스리랑카의 경우에는 인권침해의 기본적인 양상이 대규모(수천건 내지 수만건)의 강제적 실종, 즉 체계적인 살해와 시체유기였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적인 과거인권침해의 양상은 불법체포, 감금과 고문, 이를 통한 증거조작과 유죄판결이었으며, 실종이나 의문사는 예외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청산을 한다고 할 경우 기본

적인 인권침해의 양상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이 점은 한국의 경우 사법체계가 형식적으로 작동했다는 점에서 그 양상이 다소 완화된 측면이 있는가 하면, 그 사법체계가 전체주의적인 것이어서, 굳이 실종과 살인을 저지르지 않고도 극악한 군사정권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는 양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과거청산은 지금도 여전히 존속하는 전체주의적인 사법제도, 법률, 관행의 개혁에 초점을 두어야 민주개혁의 의미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문과 불법구금을 조사함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3. 조사의 목적

가. 이 법안에 따르면 특별법의 주된 관심은 민주화운동가에 대해 의문사를 저지른 가해자를 찾아내어 처벌하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 준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는 정당한 목적이지만, 국가로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그러한 인권침해가 저질러지고 은폐될 수 있었던 법적, 제도적, 정책적 요인을 찾아내어 개혁하는 것이 적어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하며 그래야만 과거청산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전제에서, 공대위가 만든 "국가인권위원회설치법안"의 제4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어차피 대부분의 의문사 사건에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남은 몇 사건에서 가해자를 찾아내어 처벌한다는 데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전반적인 진상조사와 과거청산의 과제를 흐크리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나. 법안 23조 7항에서 검사에게 요청하여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하게 한다는 발상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공소시효가 완료된 사건의 경우에 범죄수사를 직무로 하는 검사가 어떤 근거로 범죄수사를 전제로 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리고 검사에 대하여 위원회가 지휘. 감독을 하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이 특별법안은 가해자를 찾아내어 처벌한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그러기에 충분한 권한과 기능을 위원회가 갖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소시효가 완료된 사건은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 법안 5조 3항을 보면, 위원 임기는 2년에 연임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4년간의 존속을 예정하고 있는데, 19조에 보면 진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만 할 수 있고, 22조를 보면 진정접수후 지체없이 조사를 해야 하며 24조를 보면 위원회는 조사개시후 6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1회에 한하여 3개월 연장할 수 있으므로, 결국 위원회는 아무리 늦어도 마지막 사건의 진정이 접수되어 조사를 개시한지 9개월 후인 2001년 9월말에는 활동을 종료하게 되어 있어 자가 당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라. 또 한 사건마다 대통령에게 일일이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이상하고, 6개월 및 1차 연장한 3개월의 시한안에 진상을 밝히지 못한 사건에 대하여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도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4. 그밖의 문제점 및 인권위원회설치법과 관계

대체로 과거청산위원회와 인권위원회는 과거와 미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본질은 비슷한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청산에 관한 특별법은 적어도 인권위원회설치법에서 예정하는 수준에 맞게 만들어야 하며 그래야만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준비된 국민회의 법안은, 과거인권침해 청산에 관한 다른 나라의 경험이나 일반적인 연구들은 물론이고 인권기구와 관련된 그동안의 논쟁 조차도 전혀 소화하지 못한 채 만들어져 기본적인 시각과 틀에서는 물론, 기술적인 면에서도 너무나 많은 문제점과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하나의 법안으로서 완결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국내에서는 물론, 국제사회에 도저히 내놓을 수 없는 수준이하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법안은 별개로 떨어뜨려 처리할 것이 아니라 함께 연구. 검토하여 그 면모와 틀이 김대중정부의 면모에 어울리고, 기술적인 점에서도 모순이 없는 내용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민주화운동유공자보상법의 문제점

1. 이 법안의 핵심개념은 "민주화운동"인데, 그 정의를 잘 읽어보면 문법적으로 우선 문제가 있고, 그 내용은 법원이 법률상 개념을 확정할 수 없는 불확정개념들, 즉 '권위주의적 통치', '탄압', '항거', '(권리를) 회복', '현저히 신장'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기본권이란 개념이 너무 넓어, 이 조항에 의하면 예컨대, 박정희 정권이래 정권의 그린벨트규제로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도 보기에 따라 민주화운동이라고 보아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 또한 민주화운동을 하지 않고 '권위주의적 통치'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3. 민주화운동관련 '유공자'에 대하여 보상 및 특별재심을 한다는데, 유공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거나 질병을 앓은 사람에 한정합니다. 그렇다면, 죽거나 상이를 입거나 질병을 앓지 않았지만 민주화운동으로 고초를 겪은 사람들은 그대로 방치되게 됩니다.

4. 특별재심의 경우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제기하게 되어 있는데, 과거 어떤 사건의 유죄판결도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이나 다른 법률을 위반한 "범죄행위"때문이었고 그러한 법률과 법해석과 법원의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그러한 법률, 제도를 고치지 않은 채 어떻게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한" 유죄판결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그렇게 열린 재심에서 법원이 어떻게 무죄판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 그런 악법과 잘못된 법해석에 의하여 "민주화운동"과 무관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방치되어야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5. 그외에 추모단체 등에 대한 정부지원 등의 조항도 문제가 많습니다.

6. 아마도 이 법은 통과되는 즉시 그 자체의 내적 모순에 의하여 시행불가능한 상황 또는 혼란에 빠질 것이며 분명히 위헌의 논란이 제기될 것입니다.

99. 9. 21
공대위 법안 논평

法律 第　　號

국가인권위원회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독립성) 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된 국가인권기구로서 업무와 재정적 독립은 물론 그 구성원의 신분도 보장되어야 한다.

⇒ 불필요한 규정임. 다른 조문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실질과 "업무와 재정적 독립성", "그 구성원의 신분"이 내용상 보장되는가가 중요한 문제이지 이런 선언적 규정은 무의미함.

⇒ 아직 위원회 설치근거도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조항과 논리적 순서에도 맞지 않음.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 ① 이 법에서 "인권"이라 함은 헌법,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조약과 국제관습법 또는 법률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다만, 이 법 제4장에 의하여 조사와 구제의 대상이 되는 인권은 그 장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로 해야 함.

⇒ <<② 이 법에서 "국제인권조약"이라 함은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하였거나 가입·비준할 수 있는 국제조약 중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과 같은 정의규정이 필요함.

2. "구금·보호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나.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

다. 군교도소, 군구치소 및 헌병대에 설치된 영창

라. 외국인보호소

마. 다수인 보호시설

바. 다른 법령에 의해 사람을 보호·수용하는 시설

3. "다수인보호시설"이라 함은 다수의 사람을 보호·수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하다.

⇒ << "다수인보호시설"이라 함은 다수의 사람을 보호·수용하는 시설>>이라고만 하거나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시설>>로 해야 함

4. "시설수용자"라 함은 구금·보호시설에 수용·보호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시설수용자"라 함은 구금·보호시설 또는 다수인보호시설에 수용·보호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로 해야 함.

5. "관계기관 등"이라 함은 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당사자"라 함은 이 법 제4장의 규정에 따라 진정을 한 진정인, 피해자 또는 피진정인을 한다.
7. "관계인"이라 함은 위원회의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는 정보, 자료, 장소 또는 시설 등을 알고 있거나 소유 또는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소속기관 등"이라 함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소속해 있거나 그들에 대하여 법령상 또는 사실상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인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4인의 위원은 이를 상임으로 한다.
②위원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인권에 관한 식견이 있는 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위원중 3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위원중 3인이상은 여성으로 임명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이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각 여성이 포함되도록 하고, 각 상임위원 1人을 지정하여야 한다.
⑦위원장 및 위원이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 위원중 상임위원 4명은 너무 적음. 일반적인 정부 위원회를 생각하는 것 같으나 인권위원회의 위원들은 실제로 자신이 전국 각지의 수용시설으나 구금시설, 그리고 인권침해의 현장을 찾아 조사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함. 따라서 원칙적으로 전원이 상임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적어도 6명 정도를 상임으로 하고 숫자를 11-13명으로 늘려야 함(남아공은 18명).
⇒ 위원 지명권을 대법원장에게 주는 것은 이론상 맞지 않음. 국가기관 구성원의 임명권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대통령과 국회가 행사하는 것이 마땅함. 대법원장은 국민의 대표기관이 아님.
⇒ 대법원장의 위원 지명은 결국 정부의 영향을 받거나 승진에서 탈락한 고위법관 내지 검사의 자리보전용밖에 되지 않을 것임.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는 상임위원은 그의 이익과 위원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는 위원회의 규칙이 정하는 상임위원이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6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임기 3년은 지나치게 짧음. 현정권이 마지막에 한 번 더 임명하려는 것이며, 인권위원의 독립성을 저해할 것임. 인권전문가가 부족한 상태에서 제대로 업무의 전문성을 쌓을 수도 없음.
⇒ 5-7년임기에 단임이 바람직하며 아니면 4-5년에 1회 연임 정도가 받아 들일 수 있을 만함.

제7조(위원의 신분보장) ①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2. 장기의 질병이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 위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되며 제2호의 경우에는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된다.

③ 제2항의 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탄핵을 제외한 것은 위원의 지위를 낮추려는 것임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3. 공무원(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4. 정당의 당원
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교육공무원의 경우 위원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다시 재검토할 필요있음.

제9조(위원의 보수와 예우) 위원의 보수와 예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권한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③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 전체위원회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소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두어 전체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권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불분명하고 소위원회 권한은 누가 어떻게 정할지도 알 수 없음.

⇒소위원회 숫자는 위원회가 그 업무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해야 함(예컨대, 인권침해 조사가 폭주하면 그 담당 위원의 수를 늘릴 수 있도록)

제11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소위원회의 회의는 상임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지명하는 자가 회의를 주재한다.

제12조(의사의 공개)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자문기구) ①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사무처)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사무총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사무처의 조직·운영과 사무총장 및 소속 직원의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징계위원회의 구성, 권한, 심의절차,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기타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위원의 징계처분"을 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 징계처분으로 인권위원의 신분을 불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 직원의 인사에 관한 인사위원회 및 그 규정에 관한 조항이 없이 징계위원회 규정만 두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

제16조(직원의 신분보장)위원회의 직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위원회의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17조(지부) ①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지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보조금의 지급) ①국가는 위원회의 설립·시설·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매년 보조금요구서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무총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보조금요구서를 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예산기관이 위원회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할 경우에는 예산기관의 장이 위원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요구·교부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보조금은 그 개념상 "국가외의 자"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것임.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곧 위원회가 국가가 아닌 자임을 명백히 하는 것임. 따라서 위원회가 국가기관처럼 행사하는 권한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보조금"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광범위한 감독권 및 재량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음. 그리고 예산회계법 및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니므로 위원회에 대한 보조금을 국무총리를 통해 제출하는 것은 맞지 아니하며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상 이는 "세출예산요구액"이 아니라 "보조

금지급신청"이 되어야 함(보조금법 16조).

⇒ 보조금법상 일반원리를 근거로 법무부가 주무부처임을 내세우며 권한을 행사하려고 시도할 경우 그 법적 근거를 둘러싸고 해결할 수 없는 논란이 벌어질 것이며 위원회의 위상은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임.

⇒ 보조금의 요구, 교부 및 사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면 결국 법무부가 그 주무부처가 될 것이므로 법무부의 하위기관화되며 법무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음.

⇒ 위원회의 지위를 이렇게 정함으로써 감사원의 회계감사 뿐 아니라 직무감찰까지 받게 될 것이므로 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음(감사원법 24조 1항 3호, 23조 7호).

제19조(자격사칭의 금지)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공무원이나 국가기관 자격 사칭은 당연히 금지되므로 불필요한 조항임

제20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업무처리중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유사명칭사용의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22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수사기관등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 4장에서 인권침해의 주체를 널리 공권력으로 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등의"를 삭제해야 함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침해의 유형·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10. 그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 (국가기관의 협의의무) ①관계 국가기관의 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미리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4조(국제기구에 의견제출)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제인권조약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정부 보고서를 심의하는 국제기구에 위원회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5조(자료제출 및 사실조회) ①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 등은 이에 지체없이 응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26조(시설의 방문 및 조사) ①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 및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때 방문 및 조사를 하는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소속 직원·전문가 또는 그밖의 사람을 동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하여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임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 및 조사를 하는 위원,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방문 및 조사를 받는 구금·보호시설의 장은 즉시 방문 및 조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 및 조사를 하는 위원 등은 구금·보호시설의 모든 장소와 자료 등에 접근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 및 조사를 하는 위원 등은 구금·보호시설의 관계자 또는 시설수용자와 면담할 수 있고 구술 또는 서면으로 사실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위원 등은 구금·보호시설의 장에게 면담·진술 또는 서면의 작성사실과 내용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⑥위원 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내의 일정한 장소 또는 상황에 관하여 검증을 하거나 조사한 자료 등의 원본 또는 등본, 사진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된 자료 등을 영치할 수 있다.

⑦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방문 및 조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공청회) ①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의 대표자,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 사실 또는 의견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실시하는 공청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 ①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개선 또는 시정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즉시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개선 또는 시정권고를 받은 기관이 제2항에 의한 이행계획을 작성할 경우 위원회에 자문 또는 조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에 의하여 개선 또는 시정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위원회

에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와 의견표명, 제2항에 의한 관계 기관의 이행내용 또는 이행계획, 제4항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설명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 업무에 관하여 "6. 인권침해의 유형·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를 포함시키면서 구체적인 권한에서 아래의 조항을 삭제하여 그 실질을 제거한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러움.

⇒ <<제30조 【일반지침의 작성과 권고】 ①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정한 분야에 관하여 인권침해행위의 유형과 판단기준, 인권의 침해를 예방하거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이 해야 할 조치의 내용, 업무수행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일반적인 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지침을 작성할 경우, 관계기관 등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지침을 공표하고, 관계기관 등의 장에게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29조(인권교육과 홍보) ①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교육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인권교육과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④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공무원의 채용시험, 승진시험, 연수 및 교육훈련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정부출연연구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장과 협의하여 인권에 관한 연구를 요청하거나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그 교육내용에 인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필요한 내용과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⑦위원회는 시설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30조(인권자료실) ①위원회는 그 산하에 인권자료실을 둘 수 있다.

②인권자료실은 인권에 관한 국내외의 정보와 자료, 매체 등을 수집·정리하여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인권자료실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으로 본다.

④인권자료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제출) ①법원 또는 헌법재판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포함된 재판이 계속중인 경우,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의 허가를 얻어 계속중인 재판의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2조(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①위원회는 해마다 전년도의 활동내용과 인권상황 및 개선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③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등은 제1항의 보고서와 제2항의 보고에 대한 의견, 조치사항과 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국무회의에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의 허가를 얻어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그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함.

제4장 인권침해의 조사와 구제

제33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1.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 제24조 내지 제28조 또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정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하여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②성별, 종교,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사면되거나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병력 또는 달리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 또는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굴욕감이나 그밖에 정신의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차별행위로 본다.

③이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수인보호시설'에서 일어난 인권침해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로 본다.

④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별 문제는 없으나 "인권침해"의 개념과 논리적 일관성이 있으려면 "평등권침해"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음.

제34조(시설수용자의 진정) ①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소속공무원 등"이라 한다)은 그 사람에게 즉시 진정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 장소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소속공무원 등은 진정서의 작성사실과 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시설수용자가 위원 또는 위원회 소속 직원의 면전에서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소속공무원 등은 즉시 그 뜻을 위원회(위원회의 지부를 포함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소속공무원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수용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즉시 위원회에 송부하고 위원회로부터 접수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위원회로부터 그 통보에 대한 확인서와 면담일정서를 발급받아 진정을 원하는 시설수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경우 혹은 시설수용자가 진정을 원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게 하여 진정을 원하는 시설수용자로부터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정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때 진정을 접수한 위원 등은 즉시 접수증명서를 작성하여 진정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또는 직원의 구금·보호시설의 방문 및 진정의 접수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⑥시설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정서 작성과 제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금·보호시설에서 이행해야 할 조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진정의 각하와 조사의 개시등) ①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한다.

1.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진정의 내용이 그 자체로 명백히 허위이거나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가 아닌 자가 한 진정에 관하여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뜻이 명백한 경우
4.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 다만,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진정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진정이 제기될 당시 국회의 국정조사 또는 감사가 진행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 재판이 계속중이거나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다른 법률에 정한 권리구제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6. 진정이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7.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위원회가 기각한 진정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

②위원회는 제1항제1호, 제4호 또는 제7호의 경우 다른 국가기관이 그 진정을 조사 또는 처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진정을 그 기관에 이송할 수 있고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수사기관, 또는 권리구제절차가 진행중인 기관에 그 진정을 이송할 수 있다. 이때 이송을 받은 기관은 그 진정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가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 그 진정이 제1항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진정을 각하 또는 이송하거나 조사를 중지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진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 또는 진정인에게 권리를 구제받는 데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제36조(다른 구제절차와 이송) ①진정의 내용이 다른 법률에 정한 권리구제절차에 따라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제출하고자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진정을 그 다른 국가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다른 법률에 따라 권리행사에 필요한 기간 또는 시효를 계산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제출된 때에 다른 법률에 의한 권리행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진정을 이송한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진정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송받은 기관은 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진정에 대한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①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의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뢰 또는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가 문제되는 경우 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후 수사기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하여 사실상 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조항이 필요함. << ② 제36조에 따라 진정이 제기된 후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한 경우, 위원회는 피해자 또는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고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검찰총장 또는 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중지 또는 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38조(조사의 방법)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당사자,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와 진술청취
2. 당사자, 관계인,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와 제출된 자료 등의 영치
3.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검증 또는 감정
4. 당사자, 관계인,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5. 증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신문

②위원회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등으로 하여금 관련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자료 등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하여 검증 또는 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위원회는 그 장소에 당사자, 관계인 또는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 또는 증언을 들을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위원 등은 관계기관 등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된 자료 등을 영치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위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한 경우 위원회는 제출을 요구하거나 영치한 자료 등의 목록, 그 대상자, 검증 또는 감정을 한 장소, 시설, 자료 등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관계인, 그 가족, 동거인, 고용인 또는 피고용인, 관계기관 등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게 증인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증인으로 참여한 사람은 조사의 절차와 내용을 기재한 조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⑦제1항에 의한 검증,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제2절, 제3절, 제5절, 제6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구인에 관한 절차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⑧위원회가 자료 등의 제출 또는 그에 대한 검증, 감정을 요구하는 경우, 그 자료 등이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인 경우에 한하여 관련 중앙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그에 대한 검증,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관련 중앙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 위원회의 조사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하려면 보조적인 권한으로 국세청과 같이 질문검사권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제42조 【질문검사권】① 위원회는 제41조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의 소재 또는 관계인에 관하여 알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질문하거나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제41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39조(위원의 제척 등) ①위원과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 그 진정에 대한 조사와 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진정의 당사자가 되거나 진정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때
2. 위원이 당사자와 호주, 가족,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가 있었던 때
3. 위원이 진정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
4. 위원이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거나 되었던 때
5. 위원이 진정에 관한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에 관여한 때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하고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사유를 명시하여 그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기피신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자신이 결정하기에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회부할 수 있다.

③위원은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그 진정의 조사와 구제업무를 회피할 수 있다.

제40조(진정의 기각) ①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정을 기각한다.

1.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2. 진정의 내용이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진정에 대하여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위원회는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 진정의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합의의 권고) 위원회는 조사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2조(조정) ①위원회는 진정에 대하여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하고 제41조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진정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②조정은 조정절차를 시작한 후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다음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조정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 중에 당사자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④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2. 피진정인의 피해자에 대한 사과
3. 원상회복, 손해배상, 손해보상, 그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4.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⑤조정위원회는 제3항의 결정을 한 경우 지체없이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당사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제43조(조정의 효력) 제42조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한 조정과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44조(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조정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를 둔다.

②조정위원회는 위원회가 회부한 조정을 심의·의결한다.

③조정위원 중 3인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위촉하고, 나머지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가 위촉하되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1.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또는 민간단체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10년이상 종사한 사람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이상 종사한 사람

④조정위원의 위촉, 임기,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조정의 절차와 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임시조치 등) ①위원회는 진행중인 인권침해를 중지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인권침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거나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의료, 급식, 피복 등의 제공
2. 다른 기관이 하는 검증 또는 감정에 대한 참여
3. 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장소의 변경
4. 인권침해행위의 중지
5. 인권침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의 당해 직무배제
6. 그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정인, 참고인 또는 증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과 명예의 보호, 증거의 확보 또는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기관 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소속기관 등 또는 관계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가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되며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받은 사항을 위원회가 정한 기한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제46조(피해자를 위한 소의 제기) ①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피해자를 위하여 위원회의 이름으로 관할 법원에 필요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전항의 소의 제기는 진정에 대한 조사가 끝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47조(소속기관 등에 대한 권고) ①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가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42조제4항 각호에 정한 구제조치의 이행
2.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피진정인에 대한 조치) ①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을 받은 검찰총장 또는 군 참모총장은 고발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사결과 또는 수사계획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요구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필요한 징계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의견진술기회의 부여) ①위원회는 제47조 또는 제48조에 정한 권고 또는 조치를 하기 전에 피진정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피진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진술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명백히 한 경우 또는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진술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경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50조(법률구조) ①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에 갈음한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하고 제4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에 대하여 소속기관 등의 장이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는 피해자에게 권리를 구제받는 데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해자를 위하여 법률구조를 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률구조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법률구조법인에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는 경우 법률구조법인은 법률구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때 법률구조법인은 법률구조의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위원회가 제공하는 법률구조의 절차,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51조(조사와 조정의 비공개) 이 장에 의한 위원회의 조사와 조정 및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처리결과의 공개) 위원회는 이 장에 의한 진정의 조사 및 조정의 내용과 처리결과, 관계기관 등에 대한 권고와 관계기관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표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보칙

제53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관계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된다.

⇒ 위원회는 가장 강력한 국가기관 및 사적 실체를 상대로 그들의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이를 공개해야 하는데 그들로부터 명예훼손 소송 등의 사태에 휘말리면 그 위상과 업무수행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될 것이므로 유엔의 권고 뿐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들이 책임면제조항을 두고 있음. 반드시 관철해야 할 내용임.

⇒ <<제58조 【위원회의 책임면제】 위원회, 인권위원, 조사위원, 위원회 소속 직원, 위원회의 위촉 또는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감정인, 민간단체 또는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작성, 공개된 보고서 또는 공표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일체의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54조(불이익 금지와 지원) ①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위원회에 한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위원회는 인권침해행위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나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보상의 내용,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55조(위원회와 민간단체의 협력) ①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의 내용, 절차와 결과에 관하여 민간단체에 자문하거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특정하여 민간단체에 위임하거나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한 민간단체의 관계자는 그 업무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직원으로 본다.

제56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사무처의 직원과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한 민간단체의 관계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

⇒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기관의 지위에 서는 자, 즉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자"로서 "공무를 담당하고" "공법상의 근무의무를 지는 자"이며 이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는 자를 말하는 것임. 따라서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관으로 본다면, 적어도 그 상임위원의 경우 "공무원"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그 자체 모순되는 것임. 이 조항과 보조금 지급조항은 합쳐서 인권위원회를 민간기구로 격하시키고, 따라서 국가기관을 전제로 부여한 각종 기능과 권한에 대하여 위헌시비를 불러 일으킬 것임.

⇒ 이 법은 인권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의 지위를 기형적으로 정하여 어떻게 보면 권한은 국가기관처럼 행사하게 하고 그에 대한 공적인 규제 또는 책임을지지 않게 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음.

⇒ 또 이렇게 되면 인권위원회 사무처에서 직원들이 따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일반 사기업과 똑같은 지위와 자격을 가지고 노동쟁의를 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

⇒ 굳이 대안을 찾자면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관으로, 상임위원을 공무원으로 하고, 그 아래 사무처에 법인격을 부여하여 인권위원회가 위임한 업무를 그 지시감독을 받아 처리하게 하면 위원회 직원신분을 민간인으로 할 수 있음.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관계와 같은 방식임.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것이 바람직한 방법인

지 고심할 필요가 있음. 왜냐하면 인권위원회가 감시견제해야 할 기관의 상당수가 국가권력기관인 반면, 금융감독위원회는 민간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임.

제6장 벌칙

제57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정서의 작성·제출을 허가하지 않거나 방해한 사람
2. 제2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사람
3.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한 후 허위의 증언을 하거나 허위의 감정을 한 사람
4.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이익을 준 사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처리중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사람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인권침해의 조사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정한 사람

⇒ 이것은 안됨. 허위진정의 죄는 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범죄로 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위원회에 어떤 사람이 진정을 하여 위원회가 조사를 하는데 수사기관이 그 진정이 허위라는 이유로 피해자나 진정인을 상대로 마음대로 수사를 하여 진실을 왜곡하고 인권침해를 은폐하며 위원회의 조사를 사실상 마비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제63조 [허위진정의 죄] ① 제36조에 의한 인권침해의 조사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위원회에 진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죄는 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논한다.>>

3.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정서의 작성사실 및 그 내용의 비밀을 침해한 사람
4.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
5.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허위의 자료 등을 제출한 사람
6.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조치를 방해하거나 위원회가 요구하는 조치를 거부한 사람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
2. 정당한 이유없이 제3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사람
3. 정당한 이유없이 제38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제출요구에 불응한 사람

제58조(과태료) ①정당한 이유없이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정한 구금·보호시설에서 이행해야 할 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59조(고발 및 징계요구) 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행위 또는 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검찰총장 또는 관할 군참모총장에게 고발하거나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그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고발 또는 징계요구에 관하여는 제4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권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설립 당시 임명하는 위원중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상임위원 1인과 국회의장 및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비상임위원 각 1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과 활동계획의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조직 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안에 예상되는 위원회의 활동내용, 사무처의 조직, 예산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제기기간의 특례) 이 법 시행일 이전에 공권력에 의하여 생명권 또는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의 경우 이 법 시행일을 제35조제1항제4호의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 본다.